

FAX 발송표지

◆ 받는 곳

기관 및 소속	참여연대
수신자	문혜진 부장
연락처	

◆ 보내는 곳

기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성명	김성우
연락처	☎ 02) 2110-6366 FAX) 02) 507-6420
E - Mail	

◆ 주요내용

제목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발송매수	표지포함 3매
기타사항	
발신일자	2002. 3. 19

회 의 록

위원장 :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후 간사로 하여금 제6차 회의결과를 보고하게 함.

간사(보험정책과장) : 배부된 자료에 따라 제6차 회의결과 보고

위원장 : 제6차 회의결과에 대한 의견개진

유병홍 위원 : 제5차회의 결과에 "3.4%와 7.2% 사이에서"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빼버린 이유는

간사 :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3.4%에서 7.2% 사이에서 단일안을 마련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었고 가능한 단일안을 만들기로 했던 것으로 6차회의에서 정리된 사항임.

유병홍 위원 : 공익위원안 3.4%에서 가입자안 7.2% 사이로 제시했다는 적시된 내용이 있었음

문경태 위원 : 수가조정소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이 수가 3.4% 인하안을 제시했고, 전체 회의에서 제안한 공익위원안이 진찰료 350원, 조제료 300원 인하라는 것은 인정하는가

유병홍 위원 : 인정함

문경태 위원 : 진찰료 350원, 조제료 300원이 2.9%에 해당한다는 것을 3.4%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면 착오라고 할 수 있느냐

유병홍 위원 : 착오가 아니며 2.9%라는 내용은 없었음

조재국 위원 : 개인적으로나 암묵적으로나 비공식 회의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음. 그 자리에 있었던 박하정 과장님도 단일안이 나오면 오늘저녁 의약계와의 회의가 곤란해진다고 하였음.

이평수 위원 : 비공식적으로 공익위원이 제시한 350원, 300원 안이 환산지수인하 3.02%라는 말까지 나왔으나 공식적으로

몇%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음. 제5차회의 결과 공익위원 350원 300원안과 가입자 7.2%안이었음. 월요일 오후 회의에서는 공익과 가입자 양쪽이 단일안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선에서 양보가능한가를 탐색하는 선에서 끝나야 함. 350원, 300원안부터 시작해서 2.9%, 3.4%, 3.97% 이야기는 소모적 논의임

이동호 대리참석자 : 그것도 사실이 아님. 350원, 300원이 몇 %인가는 사실 나중에 계산하기로 했던 것임. 사실대로 진행해야지 이런 식은 곤란함. 공익위원으로서 상황을 파악하고 동참하도록 하는 역할과 기능을 하기 어려움. 7.2% 내에서 하자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며 확정은 의결을 거쳐야 한다면 사실대로 적시하고 넘어가야 함.

이평수 위원 : 공익위원 의견이 350원, 300원이라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자

위원장 : fact는 확실히 정리하고 의견을 개진하겠음.

조재국 위원 : 이 위원이 공익위원^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공익위원이 건강보험재정에 ~~관심~~과 열의가 없다고 볼 수 있는가? 유 위원이 같은 주장을 하니까 같은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임.

최규옥 위원 : 3.4%에 해당하는 안으로 350원-300원안이 제시되어 받아 들였고 다시 몇%에 해당하는지 짚고 넘어가지 못함. 수치는 변할 수 있는 것이며 3.4%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하자는 내용이었고, 문 위원이 계산상 이렇게 되었다고 했으니 정부가 속였다고 할 수 없음. 350원-300원에 관하여 더 이상 논하지 말고 안을 내어 정리하자.

김병익 위원 : 의료계가 수가인하를 용인한 사실이 없음. 반발이 심해 건강보험 거부까지 논의되고 있는 실정임. 공익위원은

수가 2.9% 보험료 6.9%안을 제시하였음. 여기서 수가인하 몇%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가인하 자체가 매우 중요함. 지금 시기를 넘기면 보험재정문제가 크게 증폭됨. 수가 적정성 평가를 통해서 재조정한다는 조건아래 가부간 표결 또는 합의하는 방안을 논의하자.

위원장 : 공인위원안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논의할 사항이 아님. 한 위원 한 위원이 하신 말씀은 위원의 의견으로 정리하고 위원회가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해야 함. 간사가 공익위원안을 정리하라.

간사 : 수가조정소위원회에서 가입자, 의약계, 공익위원이 각각 의견을 제시함 공익위원안은 수가 3.4%인하였음. 4차회의시 공익위원안으로 보험료 7%인상-의약계 2,000억원 절감 및 약제비 절감안과, 보험료 9%인상-의약계 2,000억원 절감 및 약제비 절감안 및 보험료 7%인상-수가 2%인하안이 제시되었음. 제5차회의에서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보험료 7%인상-진찰료 350원 조제료 300원안이 제시되었는데 수가 3.4%를 환산한 것이 아니라 의약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해서 나온 안임. 350원-300원이 몇%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으나 계산해보니 2.9%로 나왔음.

위원장 : 350원-300원이 3.4%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음. 이제 정리된 상태이므로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회의결과에 상세히 담고 위원회에서 정리된 것으로 하고 흐름을 유지하자. 환산지수 2.9%인하가 350원-300원안과 같은 안으로 알아주시기 바람.

김인기 대리참석자 : 회의에서 보험료는 의견접근이 된 것처럼 방송되었는데 해명바람.

위원장 : 그동안 인터뷰한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사실은 없음. 제6차 회의결과 중 “의견접근” 표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음.

유병홍 위원 : 가입자의 이견이 있었다는 것을 회의록에 적시해 주기 바람.

위원장 : 지금상태에서 이견이 있었다는 내용은 적절치 못함.

현기용 위원 : 수가동결안과 관련, “정회후 재논의하기로 함”이라고 해야 정확함.

김병익 위원 : 정회후 논의되지 않고 지나갔으므로 양해하고 넘어가자.

이영민 위원 : 진찰료 350원-조제료 300원을 환산율인하로 해야 형평성에 맞음

위원장 : 전체 위원회에 충분히 뜻이 전달되었으니 이만 정리하자

김정태 위원 : 이제 구체적인 ^{2차}안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해야 함

유병홍 위원 : 2.9%안은 제6차 회의 말미에 제시되었고 가입자 측은 생각도 못한 안임. 그래서 논의자체를 못한다는 의견이었고, 복지부와 공급자가 다시 논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오늘 다시 회의를하기로 한 것임. 따라서 새로이 진전된 내용이 있으면 제시하라. 가입자 단체간 논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함

위원장 : 공익위원은 다른 안이 있으면 제시하기 바람. 가입자 측이 같이 행동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하는 것 아닌가. 안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정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음.

김병익 위원 : 가입자 대표위원들이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장관 만나고 가면, 공익위원이 복지부장관 시키는 대로 할 줄

알았는가?

위원장 : 가입자 대표가 장관을 면담한 후 면담결과에 대하여 전달받은 바 없음

조재국 위원 : 공급자 측에서 위원회에 1회 불참하였고, 가입자 측에서 1회 불참하였는데 양쪽에 부탁드리겠음. 가입자나 공급자가 단체의견에 맞지 않으면 회의에 불참하는데 그래서 국민에 대하여 위원으로의 역할을 못함. 단체의 의견은 회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면 되므로 앞으로는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기를 당부드림.

위원장 : 2.9%안에 대하여 공익위원안이 변동 없으면 더 이상 의견조율은 불필요함.

김병익 위원 : 수차례 회의를 아침 일찍부터 몇 시간씩 하여 피로가 쌓이고 있음. ~~그래도~~ ^{2002. 10. 10.} ~~복지부~~ 재정을 안정시켜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피로하고 지루하지만 회의에 임하고 있음. 5차 회의에서는 의료계 6명이 퇴장하였고 6차 회의에서는 가입자가 퇴장하여 결정을 못 했는데 오늘은 누가 퇴장하든 마무리하는 것을 전제로 정회해야 함.

김희봉 위원 : 가입자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회의에 진지하게 참여하고 있음. 여기 복지부장관 만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어제 가입자대표들이 장관 면담하는 자리에 본인은 불참하였음. 그런데 매도하는 것은 듣기 안 좋음. 이제까지 진지하게 충분히 논의하였음. 각자가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것이므로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음.

이동호 대리참석자 : 수가 2.9%안의 경우 당초 재정추계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요구함

유병홍 위원 : 그저께 처리시점에서 공급자가 안 나온 것은 우리

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것이었음에도 복지부가 조정하겠다고 하여 기회를 주었는데 가입자단체가 불참한 이후 복지부가 밤새 조정하는 노력이 없었다는데 가입자 단체는 불만임. 장관과의 면담이 심기를 건드렸다면 왜 일관성이 없는가?

김병익 위원 : 가입자 단체가 장관을 만나는 것은 공익위원회에 조정토록 압력을 주라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심기를 건드렸다고 하는 것임. 어제 그저께도 결정을 못 했음. 이제는 성원이 된다면 결정하는 것이 당연함.

위원장 : 정회해서 위원회 밖에서 의견조정이 되어 합의되기가 어렵다는 판단임. 정리단계로 들어가자.

문경태 위원 : 이동호 위원 요구사항을 설명하겠음. 보험료 6.9% 인상시 금년 9개월분 ~~2004년 9월분~~ 당초 9%안보다 1,638억원이 감소하고 수가 2.9% ~~인하~~ 8개월분 급여비 1,650억원이 절감되어 계산상 약간 더 절감되어 2006년까지 5개년 계획에 기본적인 차이는 없음.

이동호 대리참석자 : 재정적자문제가 조기에 해결되기를 희망함.

이태수 위원 : 오늘아침 철도파업이 노사정 합의로 정상화되었음.

오늘 회의도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길 희망함. 밤사이에 어제 회의결과에서 진전된 것이 없었고 조정노력도 없었다면 상당히 문제임. 건보재정의 누적적자를 생각할 때 3자 합의기구인 건정심에서 이 정도의 진통은 당연함. 그러나 오늘 바람직하게 마무리해야 사회적 평가가 가능함. 공익위원 다수안인 2.9%에 대하여 공급자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함. 공급자도 어렵지만 받아들인다면 2.9%의 의미가 다르게 됨. 3.4%는 가입자 단체의 마지노선임.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어렵지만 공급자 측에서 동의해 주실 수 있는 안으로 봄.

2.9%와 3.4%는 0.5% 차이인데 양측에서 진전된 조정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유병홍 위원 : 가입자 측에서 3.4%를 받아들이는 듯한 표현인데 현재로는 아님.

현기용 위원 : 2.9% - 3.4%가 가입자 안이라면 공급자는 배제된 것임. 정회후 공급자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건정심의 3자 합의체 정신에 맞고 형평성도 있음.

성익제 대리참석자 : 2.9%안은 받아들일 수 없음.

문경태 위원 : 조금전에 말씀드린 2.9%시 재정변동상황을 다시 계산해 보니, 수가 2.9% 인하시 금년 1,804억원이 절감되고, 보험료 6.9%인상일 경우 당초 9%보다 1,703억원의 손실이 발생함.

위원장 : 추가 의견이 없으면 정회하겠음. 공급자와 공익위원, 공익위원과 가입자가 의논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되 가능한 한 합의해서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모습이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하기 바람. 09: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음.

<회의속개 : 09:35>

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겠음. 조정된 의견이 있으면 발표하기 바람.

김정태 위원 : 노동계와 농민단체의 반발이 있었지만 가입자 단체는 보험료 6.7% 인상과 수가 3.97% 인하를 건별로 처리하기를 제안함.

이동호 대리참석자 : 가입자 단체의 보험료 인하안에 공감하나, 보험료 인하만이 능사가 아님. 가입자 안이 0.2% 차이가 나는데 명분을 쌓기 위한 접근임. 보험재정을 보다 빨리 정상화하는 노력보다 정치적인 감각으로, 위원회가 결정했다고 해서

면피하려고 함. 공익위원안이라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 함.

위원장 : 이 위원은 보험료 6.9%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김병익 위원 : 작년말 차입금을 절반이라도 해소하려면 10% 이상 인상해야 하고, 1/3이라도 해소하려면 8%를 인상해야 함. 개인적으로는 12% 인상이 온당하지만 결국 공익위원안 6.9%를 제시함. 의약제는 수가 동결안이고, 가입자안은 7.2%에서 3.97%까지 내려왔으므로 2.9%가 중립적인 수치임.

조재국 위원 : 공익위원 역할은 일관되게 투표하지 않고 합의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보는 것임. 보험료는 9%에서 내려왔고, 수가는 동결에서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결정되어진 과정도 의미가 없지 않고, 공익위원들의 역할도 없지 않았음.

위원장 : 7차회의까지 회의내용면에서나 질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판단자료가 부족하였는데 하루빨리 보완하여 자료를 기초로 논의되도록 하겠음.

현기용 위원 :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만 공급자 입장은 상당히 어려움. 공급자 입장은 보험료가 9% 인상안이 관철되기를 바램. 그러나 국민부담 절감 차원에서 보험료인상율을 인하한다면 수용할 수 있음. 수가는 동결 자체도 실질적인 인하임. 의약분업 후 일부 의원이 득을 본 것이 있으나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회원들을 설득하기 어려움. 강요에 의한 수가인하의 결과가 우려됨. 여러 번 반복하지만 동결 자체도 설득·무마하기 어려움.

위원장 : 동결안을 주장하는 것이데?

문경태 위원 : 위원회 구성에 난산을 거쳤지만 짧은 기간 많은 회의를 하여 최종 합의시점에 왔음. 담배부담금 나누는 방법

에 대해서는 지역쪽이 양보하여 직장쪽에 더 배분되도록 배려하였다고 생각함. 경총 김정태 위원께서 보험료 6.7% 인상안을 제시하셨는데 지역의 경우 6.9%보다 56억원 정도 혜택이 돌아감. 농민단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고 가입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했으면 함.

강암구 위원 : 보험재정을 운영하는 공단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많이 올리고 수가를 많이 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가입자와 의료계가 회의결과를 수용하고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공단은 어렵지만 보험료 6.7%안을 수용할 수 있음.

오건호 대리참석자 : 보험료와 수가결정을 따로 한다면 수가를 먼저 결정해야 함.

문경태 위원 : 보험료는 단일안이고, 수가는 복수안이지만 분리할 생각은 없음.

이평수 위원 : 보험료는 의결이 결정되었음. 공급자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2.9%를 가지고 표결하는 것보다 0.1%차이인 3.0%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어떤지. 표결할 경우 소수가 된 쪽이 상처를 받게되어 나중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 어려움이 있을 것임. 표결보다 합의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함.

이태수 위원 : 건정심 향후 논의를 위해서도 합의정신에 찬성함. 표결할 경우 소수가 된 쪽의 양금이 남게되고 논의과정에 세 대결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음. 공급자가 수가동결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공식입증이 안되고, 수가인하가 대세임. 건보제도 발전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양보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기 바람. 공익위원이 2.9%이고 가입자위원안이 3.97%인데 2.9%를 넘지 못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 수가를 2.9% 내리고 대신 상대가치점수 변화를 통해 약간의 삭감

을 해서 건보재정안정을 위해서 공급자가 아름다운 양보를 했으면 함. 공급자가 이 정도의 양보를 대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수가인하를 2%대로 유지하고 진찰료, 조제료를 50-100원 삭감하는 2.9% + 상대가치점수 변화를 통한 α 삭감안을 제시함.

이영민 위원 : 자료를 동원하지 않는 것은 고통분담이란 말에 꿈쩍 못하고 있는데 마치 근거 없이 몰타기 위한 주장으로 들림. 공급자 주장은 동결안임. 국민을 위해 강하게 못하고 2.9%도 어려우나 참고 있음.

성익제 대리참석자 : 가입자나 공익위원은 국민선풍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생존의 문제임. 병원수입에 대하여 주장해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있음. 작년 84개 병원이 부도가 났고 9,500억원이 가압류되어 ^{급여청구비} 3개월분에 해당함. 순식간에 30%의 병원이 부도상태를 맞을지도 모름. 근로기준법 문제, 급여인상 등 병원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의사 월급 올리지 않고 의사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공급자 의견 다르나 동결안은 마지노선임. 서울대 보고서 이후 병원수가 37%의 인상요인이 있는데 동결할 경우 40% 수가인하를 당하고 살아남을 비결을 알려주기 바람. 간호사 인건비도 안되는 수입으로 병원운영을 하라고 하는데 대안이 있어야 받아들이지 아무런 대안 없이 이럴 수가 있는가?

신현호 위원 : 가입자 위원 의견도 8인이 서로 다름. 현실적으로 협의가 불가능하므로 더 이상 논의는 불필요함. 표결로 하자

위원장 : 보험료조정소위원장은 분명히 9%를 주장했고 7%, 6.9% 안까지 나왔으며, 문경태 위원도 가입자 안인 6.7%까지 좋다고 했으므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이 된 것 같고, 수가

에 대한 공급자주장은 물가인상 임금인상 등 20% 인상요인이 있으나 마지노선은 동결안이고, 공익위원 2.9%안은 가입자, 공급자 모두 불만이나 3개월 이내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여 의약계내에 고통분담이 골고루 되도록 수가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수가 2.9%인하와 보험료 6.7% 인상안을 표결하는 방안이 제안됨.

오건호 대리참석자 : 단일안에 대하여 각 단체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복수안으로 표결할 것을 제안하며, 가입자 위원 안은 수가 3.97% 인하와 보험료 6.7% 인상임.

위원장 : 합의는 불가능한 것 같으니 부득이 표결해야 하겠음. 제안된 안이 보험료는 6.9%와 6.7%, 수가는 2.9%, 3.97%, 동결안이 있는데 표결안은 보험료 6.7% 수가 2.9%안과 보험료 6.7% 수가 3.97%안 2개임.

김병익 위원 : 보험료는 ~~같은~~ ^{2002년 10월 10일} ~~같은~~ ^{2002년 10월 10일} 수가만 선택하면 됨.

위원장 : 이태수 위원 조정의견과 이평수 위원 3.0%안도 있는데 표결안을 수용할 것인가

이평수 위원 : 합의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안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람.

위원장 : 위원의 제안으로서는 접수하지만 가급적 2개안으로 줄었으면 함.

이태수 위원 : 3.0%나 $2.9\% + \alpha$ 에 대하여 공급자 의견은 어떤지. 투표결과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야 함.

조재국 위원 : 공익위원 2개안이 나왔는데 수치변경에 대하여 공급자 단체 의견을 물어도 여기 오신 분이 혼자서 결정 못함. 가능한 한 합의를 했으면 좋겠지만 합의는 어려운 것 같음. 투표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음. 새로운 안으로 조정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투표하더라도 각자 의견을 표로 제시하는
것이므로 편이 갈라지는 것은 아님.

위원장 : 그동안 합의에 버금가는 노력을 해왔음.

이평수 위원 : 소수안에 합의가능성도 있음. 투표해서 결정하는
것과 합의하는 것은 결정하는 것은 같지만 내용이 다름.

문경태 위원 : 4개안을 하나씩 정리해서 최종 2개안으로 표결하자.

이평수 위원 : 합의여부는 거수로 끝내자.

위원장 : 지금까지 합의노력 해옴. 표결여부 결정은 거수로 하자.

이평수 이태수 위원 : 합의가 안된다면 제안을 철회하겠음.

현기용 위원 : 보험료는 마지막으로 6.7% 단일안임. 수가는 공급
자 동결안, 가입자 3.97%안, 공익위원 2.9%안인데 3개안을
표결하는 것으로 하고 공급자 입장정리를 위해 짧게 정회할
것을 요청함.

위원장 : 합의노력을 하였으나 ~~합의~~ 합의가 어렵다는데 동의한
것으로 하겠음. 그러면 표결하는 것으로 하고 표결방법을 정리
하자.

문경태 위원 : 수가 동결안은 지금까지 논의과정으로 볼 때 안으
로 성립하기 어려움.

오건호 대리참석자 : 이후 표결은 기명투표로 하자.

문경태 위원 : 3.97%와 2.9%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제안함.

위원장 : 동결안은 공급자 불만이 있겠지만 위원회 결정으로 배
제되었음. 공급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위원회 결정은 유효
함. 표결방법에 대한 의견은?

문경태 위원 : 무기명으로 할 것을 제안함.

위원장 : 기명투표와 무기명 투표방안이 제안되었음.

오건호 대리참석자 : 기명투표를 해야 함. 각 단체의 의견이 공개되는 것이 요구됨.

문경태 위원 : 지난 12월 28일 건보심회의도 무기명으로 했는데도 누구는 어디에 찍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음. 기명으로 할 경우 공익위원 입장이 곤란해짐. 투표용지를 사용한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함.

위원장 : 기명·무기명 모두 양면성이 있음. 그러나 건정심의 결정은 위원이나 각 단체보다 위원회가 국민에게 다가가는 것임. 기명으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를 표결하겠음.

오건호 대리참석자 : 거수로 결정하고 어느 단체가 어디에 투표하였는지 기록으로 남기자.

조재국 위원 : 투표는 개인의 양심과 합리적 판단에 따라 하는 것인데 기명으로 하는 것은 단체의 의사를 강요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음.

이태수 위원 : 온 국민이 ~~마지막~~ 결정단계를 주시하고 있음. 일사천리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음. 저는 공익위원이지만 입장표출에 전혀 문제가 없음. 확신과 소신을 투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의미 있음. 어느 안에 투표하였는지 투명하게 드러나야 함.

문경태 위원 : 기명·무기명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함. 투표방법을 결정하자.

위원장 : 합의가 안될 때 합의방식이 투표임. 기명이나 무기명 모두 의미가 있고 모든 의견은 존중되어야 함. 투표방법을 기명으로 할 것이냐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거수로 결정하겠음. 기명을 원하시는 분 거수 : 9명, 무기명을 원하시는 분 거수 : 13명, 투표방법은 무기명으로 결정되었음.

이태수 위원 : 앞으로 위원회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는 것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지금 결정은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기록해야 함.

간사 : 어느 쪽에 거수했는지 확인하지 못했음.

이평수 위원 : 제1차회의시 회의록 공개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했고 발언 내용도 요지만 적고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기로 했음.

이태수 위원 : 앞으로는 무기명으로 하자는 것임.

위원장 : 지금 표결결과는 공개하자는 것인데

이동호 대리참석자 : 앞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전부 무기명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문경태 위원 : 일단 무기명으로 결정되었음.

이태수 위원 :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최소한 기록으로 남겨야 함.

이주형 대리참석자 : 회의록에 기록하는 것이 뭐가 어려운가.

조재국 위원 :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음.

위원장 : 각자 의견이 다른데 개별기록을 원치 않는 분도 있고 또 표결기록은 문제의 소지도 있음.

문경태 위원 : 지난번에 아침에 건보심 회의를 하고 오후에 재정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누구는 누구편 하는 말이 나왔음. 끝나고 나와서 편나누기 하자는 것인가. 무기명으로 결정되었으면 무기명으로 처리해야 함.

위원장 : 기명, 무기명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정하는 것임. 결정하는 방식을 거수로 하여 무기명으로 결정하였으면 지금 표결한 것도 당연히 무기명이 적용되는 것임. 위원회 결정을 무기명으로 하는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논의하기로 하고 무

기명부분에 대한 논의는 충분함.

이태수 위원 : 회의는 공개되어야 함.

신현호 위원 : 이 문제에 대한 위원장님 말씀이 맞음. 본안에 대한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음.

위원장 가입자 위원안을 1안으로 하고 공익위원안을 2안으로 하도록 하고 간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음.

현기용 위원 : 마지막 정리를 위해 정회를 요청함.

위원장 :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정회는 불필요함. 지금 정회하면 단체행동을 하게되므로 그냥 하기로 하겠음.

<이 때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이 퇴장하고 투표용지가 배부됨>

간사 : 배부된 투표용지에 제1안은 가입자안으로 보험료 6.7%인상, 수가 3.97%인하이고, 제2안은 공익위원안으로 보험료 6.7%인상, 수가 2.9% 인하임. ^{2002년} ~~휴동할~~ 수 있으니 투표용지에 기재해 주시기 바람. 제1안과 제2안 반복 설명

현기용 위원 : 정회요청

위원장 : 정회는 불필요하니 그냥 하자.

< 가입자 위원 3~4명, 의약계 위원 5명이 회의장 밖으로 나가
가고 회의장에 남은 위원 대부분은 기표를 완료하고 투표용
지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일부 위원은 투표용지를 미 제출>

위원장 : 투표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 회의장 밖에 나간 위원은
11시까지 들어오시도록 통보함(11시 5분전)

< 11시 5분에 회의장 밖에 있던 위원들이 모두 들어오고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가방을 가지고 퇴장>

위원장 : 사실상 정회모임을 갖는 결과가 되었음.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에게 투표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이견이 없으면
정리하겠음.

< 위원장이 투표용지를 제출하지 않은 위원에게 제출토록 독려
하자 현기용 위원이 우리는 투표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며
투표하지 않았고, 이영민 위원이 발언을 신청하였으나 표결
중이므로 끝나고 발언하라고 함>

위원장 : 의사진행발언은 개표후 하도록 하고 더 투표할 분이 없
으면 개표에 들어가겠음.

< 간사와 가입자 및 공익위원 입회하에 위원장 앞에서 개표>

위원장 : 개표결과 제1안이 9표, 제2안이 10표임.

<잠시 후>

위원장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특별법 제7조 제3항 및 운영규정 제
7조제3항) 오늘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22명이 참석했는
데 19명이 투표했고, 1명은 ~~특정권~~ 2명은 미제출인데 3표에 대
해서 기권 또는 출석여부를 따져보아야 하겠음. 출석위원 수
를 투표하여 의결에 참여한 위원으로 보는 것인지 개의시 참
석한 위원으로 보는 것인지.

< 간사에게 자문변호사에게 물어보라고 한 후>

신현호 위원 : 공익위원 대표와 가입자 대표가 의논할 필요가 있음

현기용 위원 :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는 투표행위에 참여하기 위
해 참석한 것이 아님.

위원장 : 그렇다면 현 위원은 지금 위원으로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건에 대해서 위원이 아님. 나중에 분명히 확인해
주셔야 함.

현기용 위원 : 예, 표결에는 불참으로 해 주시고 의사진행 요청을
위해 여기 와 있음.

위원장 : 표결결과에 대해서 변호사이신 신 위원 의견은 어떤지?

신현호 위원 : 이런 경우 투표에 참여한 사람을 출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투표에 참여한 의견 중 반을 넘는 것 즉 19명의 다수 의견으로 판단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나중에 얼마든지 결과를 바꿀 수 있음. 19명중 10명이 찬성한 공익위원안이 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함.

위원장 : 신 위원 의견에 이견이 없는가. (확인 후) 신 위원 의견에 이견이 없으므로 제2안인 공익위원안이 가결되었음. 위원회에서 표결을 하였지만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였고 합의정신은 존중되어야 할 것임.

현기용 위원 :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던 입장을 밝히겠음. 공급자로서 회의에 참여하여 수가 동결을 주장하였지만 수가 인하안만 채택되어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음. 수가인하로 인하여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밝힘.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는 유감을 표명하^{2002. 8. 3.} ~~원~~ ^관

< 이영민 위원이 발언하려고 하자 위원장이 마무리하고 나서 나중에 하라고 하며 제지>

위원장 : 위원회에서 발표할 사항을 정하고 회의를 마무리하겠음.

조재국 위원 : 결의안을 내는데 의견이 없다면 초안을 읽겠음.

-결의문 초안을 낭독한 후- 공급자도 동참하는 내용을 보충했으면 함.

김병익 위원 : 의료계에 촉구하는 내용이 필요함.

이태수 위원 : 합의한 것이 아니므로 결의문은 불필요함.

현기용 위원 : 회의결과만 보도해야 함.

김병익 위원 : 앞으로 선언적 의미에서 부대조건을 달자. 복지부에서 넣기 어렵겠지만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자.

문경태 위원 : 문안에 대해서는 몇몇 위원에게 위임해 주시면

작성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음.

위원장 : 위원회 입장에서 1, 2, 3항에 대해서 노력하라는 것이니까 1, 2, 3항을 촉구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도록 하고, 그동안 수많은 토론을 거쳐서 합의하려고 공동노력한 사실과 합의정신을 밝히고, 보험료를 9% 인상에서 6.7% 인상으로 낮추어 조정하고, 수가를 2.9% 인하 조정, 앞으로의 방향성으로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노력과 관련한 사항을 촉구했다는 내용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음.

이평수 위원 : 김병익 위원 제안을 구체화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음. 제1항 중 “고가약 억제, 약가 사후관리” 등은 “약제비 절감 노력”으로, 제2항 중 “공단의 관리운영비 절감”을 “건강보험 운영의 효율화”로 제3항 중 “3개월 이내”를 “조기에”로 바꾸어야 함.

신석우 위원 : 항의 순서를 급여비 규모가 큰 순서로 하여야 함.

위원장 : 이 위원 의견을 반영하겠음. 가입자나 공급자가 부담스러운 내용은 fact만 정리하고, 합의정신을 표시하겠음.

김인기 대리참석자 : 농민단체는 보험료를 6.7%나 올린 위원회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움. 결의문으로 할 경우 많은 농민단체와 협의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결의문은 다음 회의에서 채택하고 오늘은 보도자료로 하자

신현호 위원 : 대표로 참석하는 경우 대의권을 가지고 온 것이므로 대표로서 합의할 수 있음. 단체에 가서 물어보아야 한다면 대표로 참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위원회는 노사합의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며 지나친 것 같음. 농민·소비자 단체의 어려움을 부각하고, 의료계 어려움 더 적시하여하도록 고려하고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이므로 결의문 내는 것이 좋겠음.

이태수 위원 : 결의문을 내는 것은 부담스러움. fact 위주로 보도하고 1, 2, 3항을 부대결의로 하자.

위원장 : 정리하겠음. 결의안이 부담스러우면 발표문으로 하겠음.

신 위원 말씀대로 가입자와 의약계의 어려운 사실 인정하고, 재정안정 노력에 공감, 추진하기로 결의한 사항 등을 보도자료로 내겠음.

오건호 대리참석자 : 공단 관리운영비 절감은 공단 노사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해야 함.

김병익 위원 : 공단이 보험자로서 노력해야지 무슨 소리인가? 그러면서 가입자와 공급자에 고통분담하라는 소리가 나오는가?

위원장 :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음.

이평수 위원 :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공단 관리운영비만 표현하는 것은 부담스러움. 관리운영비 뿐만 아니라 수입증대를 위한 노력 등을 포함하는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문경태 위원 : 효율적인 조직운동을 통한 보험료 동 수입증대, 지출억제 등도 포함되어야 함.

신석우 위원 : 전부 정부가 하는 일인데 따로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넣는 것은 문제가 있음.

김병익 위원 : 재정적자에 대한 원인을 밝혀야 함

위원장 : 3개항에 대한 의견은 이 정도로 하겠음. 발표문은 공익위원과 관심 있는 위원께서 함께 참여하여 정리토록 하겠음.

이태수 위원 : 건정심 다음일정과 의제는 무엇인지. 수가소위의 가동여부를 알려달라.

문경태 위원 : 상대가치운영기획단운영방안을 정리하여 다음 번

회의에 상정하겠음. 다음회의 일정은 추후 통보하겠음.

김병익 위원 : 수가와 보험료에 매달려 왔는데 앞으로 다룰 의제에 대해서는 3월 초순쯤에 날짜를 잡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와 재정상황도 함께 논의하기를 제안함.

위원장 : 다음회의에서 재정변화를 보고하고, 상세한 실무적인 자료도 준비해 주기 바람.

이태수 위원 : 수가 적정성 및 약가 적정성 조사도 수가소위에서 논의되어야 함. 다음 회의일정 안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음. 이영민 위원 발언요청을 했는데

이영민 위원 : 의약단체는 안전 표결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음. 의약제도 없는 상태에서 결의를 만든 것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며, 수차 발언요청을 했는데 의견개진을 막은 데 대하여 매우 섭섭하게 생각함.

위원장 : 표결중에 발언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끝나고 하라고 하였음.

이영민 위원 : 표결이 끝나고도 발언권을 주지 않았음.

위원장 : 그 후에는 이 위원을 보지 못했음.